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나36754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강보경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강상우 (소송구조)

변론 종결 2018. 12. 20.

판결 선고 2019. 1. 17.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단8035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78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사실을 알면서도 소장 부분 등을 일부러 송달받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소장 부분 및 판결정본을 송달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1.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5. 8.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장 부분 및 판결정본을 일부러 송달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버스의 운전자 I은 2013. 8. 12. 11:1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9 중동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민회관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중 승객의 요구로 뒷문을 통해 G등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 버스의 우측 후방에서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버스에서 하차하여 인도 쪽으로 달려가던 G의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G에게 2013. 9. 6.부터 2016. 12. 1.까지 치료비186,813,830원, 손해배상금 330,000,000원 등 합계 516,813,83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오토바이의 책임보험자인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120,000,000원의책임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G를 하차시킨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 70%와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G를 충격한 피고의 과실 30%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 고, 원고가 피해자 G에게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37,783,620원(= 157,783,620원(=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525,945,430원 × 피고 과실30%) - 피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자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원고 버스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 불과할 뿐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과실비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버스 운전자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인도에 접하지도 않은 3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점, ②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버스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탑승객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하차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③ 원고 버스에서 하차한 G의 보폭과 보행속도, 원고 버스에서 하차 후 이동한 거리 및 피고 오토바이가 이동한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원고 버스에서 하차한 G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채 주행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G를 충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G를

하차시키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G를 충격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버스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상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G에게 공제금 516,813,83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담부분인 103,362,766원(= 516,813,830원 × 20%)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자인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120,000,000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한성, 판사 이차웅, 판사 양소은